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해방지업무 근거 마련 등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82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위해방지업무 근거 마련 등	2
※ 참고: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위기징후 감시 현황(행안부 보고사항)	9

I. 제안경위

2026년 4월 3일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조사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제46조제1항제9호 신설 및 제48조).

Ⅲ. 검토의견

1. 위해방지업무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의 예방·대응을 위해 위해 발생 또는 우려 사항에 대한 감시·조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관리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위해방지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지정하고, 위해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제46조제1항제9호 및 제4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6조의3(위해방지 등)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재산 또는 환경상 위해의 감시·예방·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사안에 대한 감시·조사 2.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 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관리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② _____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 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 ----- -----기술개발, 홍보 및 위 해방지----- ----- -----.
---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주요 재난 및 사고에 대응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에 관한 업무¹⁾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실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²⁾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의 재난 및 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 및 사고유형]

-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8)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유형이 대폭 보장되는 과정에서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재난”이 신설되었음.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재난과 관련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1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0건 등을 마련하였으며, 매뉴얼에 따라 위기징후 감시·보고 업무³⁾를 수행중임.

[위기관리 매뉴얼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감시대상	- 현행법 소관제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관련 사고로서 결함 또는 기술·구조상 특성으로 인한 피해
경보발령	- 피해확산 경과에 따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 로 구분 [*] (관심) 인명피해 발생→(주의) 추가 발생→(경계) 다수 발생→(심각) 중증피해 전국적 발생 ·인명피해 발생시(관심) 안전성조사·제품회수 등을 통해 피해 확산 차단 ·차단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다수 발생시(경계)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으로 집중 대응
대응체계	- 관계기관 [*] 은 소관 실무매뉴얼에 따라 의료서비스(복지부) 등 재난 대응 활동을 유기적으로 실시 [*] 행안부(긴급생활안정, 재난자원 관리 등), 복지부(의료 지원), 경찰청(사회질서유지), 소방청(구조·구급 지원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 ⑩ (생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3) 화학제품 피해사례 상담센터(초록누리) 및 한국소비자원(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기징후 상황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경보체계를 운영함

그런데 업무 수행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인바, 위기징후 감시·보고 업무 시 현행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의 감시·조사,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가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제조·수입·판매현황 실태조사,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표시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화학제품 안전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직무내용]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제조, 수입, 판매현황 실태조사
2. 유해화학물질·살생물물질 함유제품 조사 및 독성자료 생성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 표시기준 설정
4. 생활화학제품 신고시스템 및 정보 등록·공개 플랫폼 구축·운영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접수, 적합성 검토, 신고증명서 발급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민원관리 및 콜센터 운영
7. 생활화학제품 관련 산업계 안전관리 이행 지원
8.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준수 시장조사·감시단, 신고포상금 운영
9. 생활화학제품 수입통관 지원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⁴⁾」, 「식품위생법⁵⁾」 등 개별법에서도 위해성 감시·조사 근거를 두는 사례가

- 4)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4.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5.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관리
8. 제품사고 조사·분석 및 위해도 평가
9.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5) 「**식품위생법**」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이하 이 조에서 “제조·판매등”이라 한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식품등의 종류
2.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 제3항에 따른 제조·판매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해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8조(정보원의 사업)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등
 - 1의2.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2.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 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단체·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7.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접수·상담 등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있음을 볼 때, 현행법에도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문 의 처
02)6788-5536

참고

생활화학제품 · 살생물제 위기징후 감시 현황 (행안부 보고사항)

- **(정보 수집)** 국내 화학제품 피해사례 정보 수집처를 통해 정보 수집
 - **(실시간 상담)** 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피해사례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정보 수집('25.7.~)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하여 수집된 위해정보 자료 공유('25.2.5.)
 -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질병관리청)** 의료기관의 정보 확보를 위해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사업의 원시자료 중 화학제품 중독 관련 항목 등 수집
 - * 응급실 내원 환자의 손상 유형과 원인에 대한 자료를 조사(23개 의료기관)하여 손상예방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정보 제공
 - **(리콜 정보)** 화학제품안전포털(초록누리), 제품안전정보센터, CPSC(미국), Safety Gate(유럽), ACCC(호주) 등을 통하여 화학제품 리콜 정보 수집
 - **(커뮤니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화학제품 관련 키워드 검색으로 매체별 언급량, 최신글 등 동향정보 모니터링
 - * 빅데이터 기반 분석 플랫폼인 썬트렌드(Sometrend)를 활용하여 블로그, 뉴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의 키워드 언급량 분석
- **(정보구축)** 수집된 위해정보 내 위험 및 위해 원인, 증상 등 확인을 통하여 화학제품 대상 피해사례 DB 구축
- **(정보분석)** 연령, 성별, 기간, 제품유형, 위해원인 및 부위 등 피해정보 분석*
 - * 유관 피해정보(소비자원 위해정보 공유시스템, 국내외 리콜정보, 상담센터 접수 등 약 37천여건, '25.1.1~11.30. 기준) 중 화학제품 관련정보 108건 발체 후 분석
- **(정보활용)** 분석된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징후 감지, 상황 발생 시 위기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경보체계 운영 및 대응